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의 안 번 호 2077

제출연월일 : 2024. 7. 2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의 결격사유 중 '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'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'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'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제3호 중 "「약사법」"을 "이 법이나 「약사법」"으로, "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을 "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4.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제2조(「의료기기법」의 개정)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

되지 아니한 사람

4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17조제3항 전단 중 "제4호"를 "제4호·제4호의2"로 한다.
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 중 "제4호"를 "제4호·제4호의2"로 한다.

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제4호"를 "제4호·제4호의2"로 한다.
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"제4호"를 "제4호·제4호의2"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2호 중 "제4호"를 "제4호·제4호의2"로 한다.
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3호 중 "제 4호"를 "제4호의2"로 한다.

제3조(「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6항제4호 중 "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"를 "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42조제2항제4호 본문 중 "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"를 "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, 제4호의2 또는 제5호"로 한다.

제4조(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의 개정)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4호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"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이 법 또는 「의료기기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5조(「화장품법」의 개정)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3제4호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"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하

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3조의5제4호 중 "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"를 "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 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제3조의8제2호 중 "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"를 "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 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,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법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	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
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	
업자,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	
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	
수 없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<u>「약사법」</u> ・「의료법」・	3. <u>이 법이나 「약사법」</u>
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	
조치법」 또는 그 밖에 마약	
류 관련 법률을 <u>위반하거나</u>	<u>위반한 죄를</u>
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	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
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	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
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	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
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	<u>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</u>
사람	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
	<u>한 사람</u>
<u><신 설></u>	4.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
	<u>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</u>
	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
	람

④ (생 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제조업의 허가 등) ① 의료	제6조(제조업의 허가 등) ①
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	
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	
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	
수 없다.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	4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
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	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
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	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
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	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
<u>니한 자</u>	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<u><신 설></u>	4의2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
	<u>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</u>
	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
	<u>라</u>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⑩ (생 략)	② ~ ⑩ (현행과 같음)
제17조(판매업 등의 신고) ①・②	제17조(판매업 등의 신고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	③
는 제6조제1항제2호· <u>제4호</u> ·	<u>제4호 ·</u>

제5호, 제12조 및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제조"는 "판매 또는 임대"로, "제조업허가"는 "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"로, "제조업자"는 "판매업자"로 각각 본다. ④ ~ ⑦ (생 략)
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 년 개정법률 7

- 제18조의2(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) ①·② (생 략)
 - ③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(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)·제4호·제5호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.이경우 "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"는 "의료기기 판촉영업자"로, "제조업허가"는 "신고의 수리"로 각각 본다.

④·⑤ (생 략)
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저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

제4호의2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
개정법률
제18조의2(의료기기 판촉영업자
신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মা4ই •</u>
제4호의2
<u>.</u>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 등) ①

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, 수 리업자 • 판매업자 • 임대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 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 장이 허가 · 인증 · 승인 또는 신 고 수리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 • 수입 •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 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 까지,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 에는 허가 · 인증 · 승인 또는 신 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.

1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판매업자와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·제4호 및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). 다만,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의2. ~ 25. (생략)

,
1
<u>제4호·제4호의2</u>
,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 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 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7 정지 등)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 료기기의 제조업자 · 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, 수리 업자 · 판매업자 · 임대업자, 의 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• 특별자치도지사 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허가 · 인증 · 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, 영업소의 폐쇄, 품목류 또 는 품목의 제조 · 수입 · 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, 제 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 가 · 인증 · 승인 또는 신고 수리 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

여야 한다.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
개정법률
제36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
정지 등) ①

1.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[판매업자,임대업자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(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인 경우로 한정한다)·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]. 다만,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의2. ~ 25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저 등) ① 제조업자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법인인 제조업자등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합병후 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 설립된법인이 그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.다만, 영업을 양수한자 또는합병후 존속하는법인이

1
<u>제4호·제4호의2</u>
 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
·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1의2. ~ 2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 세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
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.

- 1. (생략)
- 2.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: 제6
 조제1항제2호 · <u>제4호</u> 또는 제
 5호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· ③ (생 략)
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법률

제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 등)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. 다만,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
1. (현행과 같음)
2
<u>제4호</u> • 제4호의
<u>2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9608호 의료기기법 일부
개정법률
제47조(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
드) ①

- ②・③ (생 략)

당하는 경우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	제23조(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조
업허가 등) ① ~ ⑤ (생 략)	업허가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
	음)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6
해당하는 자는 첨단바이오의약	
품의 제조업이나 위탁제조판매	
업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	
를 할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 및 「약사법」・「마	4
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・	
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	
조치법」・「의료법」・「형	
법」 제347조(거짓으로 약제	
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	
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	
를 속인 경우에만 해당한다.	
이하 같다), 그 밖에 약사에	
관한 법령을 <u>위반하여 금고</u>	<u>위반한 죄를 범하</u>
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	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
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	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	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
아니한 자

<신 설>

5. ~ 7. (생략)

⑦ ~ ⑩ (생 략)

제42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 지 등) ① (생 략)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제조업자, 수입 자, 품목허가를 받은 자, 인체세 포등 관리업자, 세포처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그 허가나 신고수리 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 나 영업소 폐쇄(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. 이하 제43조에서 같다), 품목제 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 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
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
지 아니한 사람
4의2.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
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
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
있는 사람
5. ~ 7. (현행과 같음)
⑦ ~ ⑩ (현행과 같음)
제42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

- 1. ~ 3. (생략)
- 4. 제23조제6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5호의 경우 수입자로 한정한다). 다만, 법인의 대표 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 (改任)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5. ~ 14. (생략)
- ③ (생 략)

1. ~	~ 3.	(현행과	같음)
------	------	------	-----

4.	제23	조제6항	제1호부	터 제4호
	까지,	제4호의	2 또는	제5호

- 5. ~ 14. (현행과 같음)
- ③ (현행과 같음)

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제조업의 허가 등) ① (생	제5조(제조업의 허가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	②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	
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 또는 「의료기기법」	4
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<u>형</u>	<u>실</u>
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	<u>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</u>
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	<u>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</u>
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	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
<u>한 자</u>	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<u><신 설></u>	4의2. 이 법 또는 「의료기기
	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
	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
	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③ ~ ⑪ (생 략)	③ ~ ⑪ (현행과 같음)
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3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3조의3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	
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	
매업의 등록이나 맞춤형화장품	
판매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. 다	
만, 제1호 및 제3호는 화장품제	
조업만 해당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	4
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	
하여 금고 이상의 <u>형을 선고</u>	<u>실형을 선고</u>
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	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	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	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
	지 아니한 사람
<u><신 설></u>	4의2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
	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
	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
	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
	간 중에 있는 사람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제3조의5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	제3조의5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
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사의 결격사유)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맞 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될 수 없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

<신 설>

5. (생략)

- 제3조의8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 제사 자격의 취소) 식품의약품안 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<u>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까</u> 2. <u>제3조의5제1호부터 제4호</u> 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또는 제4호의2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실형을 선고
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
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
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되
지 아니한 사람
4의2. 이 법 또는 「보건범죄 단
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을 위
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
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
간 중에 있는 사람
5. (현행과 같음)
3조의8(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
사 자격의 취소)
1. (현행과 같음)
2 제3주의5제1호부터 제4호까

경우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